

7.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 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6-81號 1996. 3. 18

1. 개정이유

미분양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를 위하여 임대주택용 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지금까지 국민주택규모(85m²)이하의 주택이 건축된 택지만 취득이 가능하였으나 면적제한을 삭제하여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이 건축된 택지도 임대용으로 취득이 가능토록 함. 단 임대주택법등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함.
- 나. 임대주택용 택지의 이용·개발의무기

간을 주택분양용택지의 처분 의무기간과 동일하게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가능케 하여 미분양 주택을 용이하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.

- 다. 공장건축용 택지의 이용·개발의무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제활동을 지원
- 라.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을 실제지급일까지 지급하게 하여 국민불편사항을 해소
- 마. 부속토지법위의 산정기준인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고,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만을 부속토지로 보았으나 이를 100분의 3으로 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킴.

3. 의견제출

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99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(참

조 : 토지국장, 전화 504-9123~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

나의 손은 정밀시공 나의 눈은 품질관리